

1. 개정이유

2023년 10월 31일까지 설정되어있는 본 훈령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본 훈령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(안 제2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훈령 제 호

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

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중 “2023년 10월 31일”을 “2026년 10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5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<u>2023년 10월 31일</u>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25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6</u> <u>년 10월 31일</u>----- --.</p>